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정언택)

가. 제안이유

❍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❍ 본 개정조례안은

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6조제2항(취업 지원 사업)에서 구직활동 촉진 및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

에 대해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
❍ 검토 결과

- 미취업자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내 타 자치구의 경우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으며, 영등포구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(시행. 2023.11.9.)을 통해 청년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.
- 본 안건은 관내 미취업자의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관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본 개정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한편, 작년 제248회 임시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4조제4항이 신설되어, 올해부터 응시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당 조항과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조항의 지원대상 중복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14조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(청년)의 사람이고, 본 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은 40세 이상 64세 이하(중장년)의 사람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범위가 상이하여 중복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356 호

제출연월일: 2024. 6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미취업자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취업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5년 본예산 반영 예정

*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10. 5. ~ 10. 25.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직활동 촉진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게 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취업 지원 사업) (생 략)	제6조(취업 지원 사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구청장은 구직활동 촉진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게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내역

○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소요재원: 21,000천원

-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: 20,000천원(100천원× 200명)
- 사업홍보 현수막 및 전단지 제작 등 홍보비: 1,000천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,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**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소요예산: 21,000천원(1억원 미만)

※ 1인당 10만원 이내, 총 200명 지원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장영미
연 락 처	02-2670-4103